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9. 11. 9.
- 나. 제안자 : 정종섭·김용근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09. 11. 9.
- 라. 상정일자 : 2009. 12. 17(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정종섭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 아동·여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11조)
-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제12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09. 11. 9~'09. 11. 30) : 결과

의견제출처	의견 요약
여성정책과	○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부)에 의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고, 그간(2005년~현재) 국장을 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대의 협력체계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인 시책 등을 수립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종섭·김용근의원이 11월 9일 공동발의 하여 접수된 조례안임.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¹⁾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1)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법적제도장치 마련 필요.

하고, 사전에 예방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설치근거로 안 제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지원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우리시는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재고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역연대 구성과 관련하여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여성부) 위원장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부단체장(시·도의 경우 국장급 공무원까지)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05년부터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 제6조제3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복잡한 문장에 대한 체계 등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는 회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제2항에 “지역 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침에서 규정한대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여 추후 지침에서 규정한 회의운영 방식과 조례의 운영방식으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됨.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조치 마련

- 안 제15조는 지역연대 회의 출석 시 실비보상 관련한 규정으로 지역 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정한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 하게 수정 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최만용, 박창규, 이병화, 정종섭 위원
 -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 검토바람.

< 답 변 >

- 정종섭 위원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조례안 중 자구 수정부분 수정

6. 토론요지

가. 찬성 : 없 음

나. 반대 : 김용근, 최만용, 박창규, 이병화, 정종섭 위원

7. 수정안 요지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안 제6조중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동·여성업무관련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시 아동·여성폭력·청소년·119·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의 지역연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11조)를 제4조로 한다.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찬성 : 5명)

9.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안 제6조중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동·여성업무관련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시 아동·여성폭력·청소년·119·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의 지역연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11조)를 제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생략)</p> <p>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업무관련 담당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지방경찰청의 아동·청소년·여성업무 관계자로서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및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동·여성업무관련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시 아동·여성폭력·청소년·119·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 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 정 안	수 정 안
<p>④ (생략)</p> <p><u>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생략)</u></p> <p><u>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u></p> <p><u>제9조(회의) ① (생략)</u> <u>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10조(간사) ① ~ ③ (생략)</u></p> <p><u>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u> <u>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u> <p>② (생략)</p>	<p>④ (제정안과 같음)</p> <p><u>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정안과 같음)</u></p> <p><u>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u></p> <p><u>제10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u> <u>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p> <p><u>제11조(간사) ① ~ ③ (제정안과 같음)</u></p> <p><u>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6조의 지역연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u> <u>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②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의 지역연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동·여성업무관련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시 아동·여성폭력·청소년·119·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